#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31

발의연월일: 2021. 2. 25.

발 의 자: 강선우·고영인·김승남

김승원 · 남인순 · 맹성규

윤관석 • 이원택 • 정성호

허 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, 이에 경찰청은 「범죄수사규칙」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.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,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'잊혀진 피해자'로 불리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로부모의 체포 및 구속·구인 과정에서 사전에 수용자 자녀를 고려한 집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.

따라서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자녀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고,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며, 부모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수용자 자녀의 인

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(안 제39조제3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갖춰야 한다.
- 1. 자녀의 존재 사전 확인
- 2. 수갑을 채우는 등 부모의 체포 장면을 자녀가 목격하지 않도록 공간 분리
- 3. 상황 설명을 위한 부모와 자녀의 대화 환경 조성
- 4. 부모에게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고지

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인과정에서 제39조제3항 각호의 절차를 갖춰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구인) ①・② (생 략)	제39조(구인) ①・② (현행과 같
	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
	찰 대상자 구인 과정에서 보호
	관찰 대상자 자녀의 인권을 보
	호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
	<u>갖춰야 한다.</u>
	1. 자녀의 존재 사전 확인
	2. 수갑을 채우는 등 부모의 체
	포 장면을 자녀가 목격하지
	않도록 공간 분리
	3. 상황 설명을 위한 부모와 자
	<u>녀의 대화 환경 조성</u>
	4. 부모에게 「아동복지법」 제
	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
	할 수 있음을 고지
제40조(긴급구인) ① ~ ③ (생	제40조(긴급구인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
	따른 구인과정에서 제39조제3
	항 각 호의 절차를 갖춰야 한
	<u>다.</u>